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1. 5.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금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지정에 따른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약정기간을 수정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를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미만으로 하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로 한다

3.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미만으로 하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금고 지정 방법)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 지정 방법) ①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 지정 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	2. ----- ----- ----- ----- ----- ----- ----- 다만, 재지정

② · ③ (생 략)	<u>은 1회에 한하며 재지 정기간은 당초 약정기 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u>은 1회에 한하고 재지 정기간은 당초 약정기 간 미만으로 하며, 사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	---	---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미만으로 하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현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금고의 중도해지)”를 “(금고약정의 중도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취”를 “청취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약정의 해

지여부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이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약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